

일반공급 안내문

※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기간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			
일자	2021.12.17(금)	2021.12.28(화) (09:00~17:30)	2021.12.29(수) (09:00~17:30)	2021.12.30(목) (09:00~17:30)	2022.01.05(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2022.01.06(목)~01.16(일) (10:00~17:00)	2022.01.17(월)~01.21(금) (10:00~16:00)

※ 인터넷 청약접수는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09:00~16:00)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332	084.7770A	84A	84.7770	30.0144	114.7914	60.9977	175.7891	15.6823	309	31	31	62	10	31	165	144	7
		084.9438B	84B	84.9438	30.4404	115.3842	61.1178	176.5020	15.7132	217	22	22	43	6	22	115	102	5
		084.8926C	84C	84.8926	31.4275	116.3201	61.0809	177.4010	15.7037	217	21	21	43	6	21	112	105	5
		합계									743	74	74	148	22	74	392	351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해당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 /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자 및 1주택(추첨제)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재(배)우자 혼인전 당첨 사실 포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 직장, 지역주택의 조합원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 점수가 같은 경우 무작위 추첨(무주택자만 가능)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우선 공급 미달 시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거주자에게 공급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시, ①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②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이 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일반공급 동시 중복청약시 무효처리

일반공급 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or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인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일반공급: 청약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선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 및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선정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청약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일반공급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 건물주택에 비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건물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17)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0		병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점수 및 보관하지 않으니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0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17)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해외체류기준 미 충족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17)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피부양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0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무허가건축확인서	해당주택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축임을 입증하는 서류
	0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해당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명실을 확인하는 공문
	0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채무가능(수입인 인적사항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채무가능 또는 외국인인 입증된 서류로 공인인증서 위임 시
	0		위임장	청약자	• 건물주택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가 자필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상기 제증명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모집공고일(2021년 12월 17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인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의 모든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